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 ① 영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 상품구조에 따라 투자원금에서 만기에 보장되는 금액 및 영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
2. 영 제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 : 투자원금에서 계약만기 시점에 보장되는 금액 및 영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영 제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재산 중 영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국내외 증권시장 또는 국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품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 가능금액으로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

② 영 제3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

투자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합계가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집합투자
증권을 말한다. 다만, 제4-7조의2 본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 이내의 양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한다)
은 제외한다.

1. 집합투자재산 중 영 제3조의3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융투자상품
에 운용하는 비중
2.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차
지하는 비중

③ 제2항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다음 각 호의 합계가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고난도금융투자상
품에 해당한다.

1. 집합투자재산 중 영 제3조의3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융투자상품
에 운용하는 비중
2.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차
지하는 비중
3. 집합투자재산 중 제2항의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하는 비중

④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제4-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기준을 따
른다. 다만, 헤지목적의 거래 등 파생상품 매매가 집합투자증권의 가
격결정 및 손익결정 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 및 손실 위험에 미치

는 영향이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파생상품 매매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영 제3조의3제2항 및 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제1항제3호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은 각각 “신탁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으로 본다.

⑥ 영 제3조의3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전신탁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합계가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1. 신탁재산 중 제1-2조의3제3항, 영 제3조의3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비중
2.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산정기준은 제4항을 준용한다)이 신탁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⑦ 영 제3조의3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일임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합계가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투자일임계약을 말한다.

1. 투자일임재산 중 제1-2조의3제3항, 영 제3조의3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비중
2.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산정기준은 제4항을 준용한다)이 투자일임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제4-20조제1항제5호에 차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신설한다.

차. 법 제46조제2항 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일반투자자

로부터 파악하여야 할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투자자로부터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투자자를 대신하여 파악하거나 거짓으로 파악하는 행위

카. 법 제46조제2항 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일반투자자로부터 파악한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분석한 투자성향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타. 법 제46조제2항 또는 법 제46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등을 고려한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실질적인 위험도보다 위험도를 낮게 분류하는 행위

제4-20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1-2조의3제3항 및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상품의 특성 및 위험구조에 대한 분석과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하지 않는 행위

나.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상품의 판매에 적합한 고객의 범위(이하 “목표시장”이라 한다)를 설정하지 않거나 목표시장 외의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를 하는 행위

다.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위

제4-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0조의2(녹취의무·숙려기간 부여의 예외 등) ① 영 제68조제5항제2호의2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119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2. 법 제229조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영 제181조제1항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

② 영 제68조제5항제2호의3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영 제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 중 법 제16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과정을 녹취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77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신설한다.

5의2. 법 제46조제2항 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일반투자자로부터 파악하여야 할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투자자로부터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투자자를 대신하여 파악하거나 거짓으로 파악하는 행위

5의3. 제5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해당 투자자의 유형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제4-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7조의2(녹취의무·숙려기간 부여의 예외 등) 영 제99조제4항제3호의2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일임재산을 제4-20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투자일임계약
2. 제4-77조제1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일임계약

제4-93조에 제26호의2, 제26호의3 및 제29호의2를 각각 신설한다.

26의2. 법 제46조제2항 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일반투자자로부터 파악하여야 할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투자자로부터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투자자를 대신하여 파악하거나 거짓으로 파악하는 행위

26의3. 제26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해당 투자자의 유형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29의2.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는 자산 중 제1-2조의3제3항 및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모집 또는 매출된 증권에 한한다)이 포함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해당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제29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3조의2(녹취의무·숙려기간 부여의 예외 등) 영 제109조제3항제1호의2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탁재산을 제4-20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금전신탁계약

2. 제4-93조제20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전신탁계약

별표 12의 “영업에 관한 자료”란의 제1호⑤ 다음에 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판매과정을 녹취한 경우 그 녹취 파일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신 설></p> | <p><u>제1-2조의3(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 ① 영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영 제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 상품구조에 따라 투자원금에서 만기에 보장되는 금액 및 영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u> 2. <u>영 제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 : 투자원금에서 계약만기시점에 보장되는 금액 및 영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u> 3. <u>영 제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재산 중 영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국내외 증권시장 및 국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품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할 수 있</u> |

는 최대손실 가능금액으로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

② 영 제3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집합투자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합계가 100분의 20을 초과
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다만, 제4-7조의2 본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
배 이내의 양의 배율로 연동하
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에 한한다)은 제외한다.

1. 집합투자재산 중 영 제3조의
3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융
투자상품에 운용하는 비중

2.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
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③ 제2항의 집합투자증권에 투
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은 다음 각 호의 합계가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고
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

1. 집합투자재산 중 영 제3조의 3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융 투자상품에 운용하는 비중
2.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 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3. 집합투자재산 중 제2항의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하는 비중
 - ④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제4-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기준을 따른다. 다만, 헤지 목적의 거래 등 파생상품 매매가 집합투자증권의 가격결정 및 손익결정 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 및 손실 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파생상품 매매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 ⑤ 영 제3조의3제2항 및 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제1항제3호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은 각각 “신

탁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으로
본다.

⑥ 영 제3조의3제2항에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전
신탁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합
계가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탁
계약을 말한다.

1. 신탁재산 중 제1-2조의3제3
항, 영 제3조의3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금융투자상
품에 운용하는 비중

2.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
평가액(산정기준은 제4항을
준용한다)이 신탁재산에서 차
지하는 비중

⑦ 영 제3조의3제3항에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
일임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합
계가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투
자일임계약을 말한다.

1. 투자일임재산 중 제1-2조의3
제3항, 영 제3조의3제1항제1
호, 제3호 및 제4호의 금융투
자상품에 운용하는 비중

2.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
평가액(산정기준은 제4항을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 4. (생략)
- 5.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 자. (생략)

<신설>

<신설>

준용한다)이 투자일임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 5. -----

-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법 제46조제2항 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일반투자자로부터 파악하여야 할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투자자로부터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투자자를 대신하여 파악하거나 거짓으로 파악하는 행위

카. 법 제46조제2항 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일반투자자로부터 파악한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

<신 설>

6. ~ 14. (생략)

<신 설>

자경험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분석한 투자성향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타. 법 제46조제2항 또는 법 제46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등을 고려한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실질적인 위험도보다 위험도를 낮게 분류하는 행위

6. ~ 14. (현행과 같음)

15. 제1-2조의3제3항 및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상품의 특성 및 위험구조에 대한 분석과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하지 않는 행위

나.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상품의 판매에 적합한 고객의

<신 설>

범위(이하 “목표시장”이라 한다)를 설정하지 않거나 목표시장 외의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를 하는 행위다.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른 이사회 의 결을 거치지 않고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제4-20조의2(녹취의무·숙려기간 부여의 예외 등) ① 영 제68조 제5항제2호의2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119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2. 법 제229조에 따른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영 제181조제1항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99조제4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5. (생략)

<신설>

<신설>

② 영 제68조제5항제2호의3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영 제3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 중 법 제16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과정을 녹취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법 제46조제2항 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일 반투자자로부터 파악하여야 할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투자자로부터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투자자를 대신하여 파악하거나 거짓으로 파악하는 행위

5의3. 제5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해당 투자자의 유형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6. ~ 19. (생략)

<신설>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109조제3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26. (생략)

<신설>

6. ~ 19. (현행과 같음)

제4-77조의2(녹취의무·숙려기간 부여의 예외 등) 영 제99조제4항제3호의2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일임재산을 제4-20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투자일임계약
2. 제4-77조제1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일임계약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1. ~ 26. (현행과 같음)

26의2. 법 제46조제2항 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일반투자자로부터 파악하여야 할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투자자로부터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투자자를 대신하여 파악

<신 설>

27. ~ 29. (생략)

<신 설>

30. ~ 32. (생략)

<신 설>

하거나 거짓으로 파악하는 행위

26의3. 제26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해당 투자자의 유형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27. ~ 29. (현행과 같음)

29의2.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는 자산 중 제1-2조의3제3항 및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모집 또는 매출된 증권에 한한다)이 포함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해당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제29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0. ~ 32. (현행과 같음)

제4-93조의2(녹취의무·숙려기간 부여의 예외 등) 영 제109조제3항제1호의2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탁재산을 제4-20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금전신탁계약
2. 제4-93조제20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전신탁계약